

서울특별시 영등포구 친환경상품 구매촉진에 관한 조례안

심 사 보 고 서

2009. 12. 18.

사회건설위원회

1. 審査經過

가. 제출일자 : 2009년 11월 17일

나. 제 출 자 : 영등포구청장

다. 회부일자 : 2009년 11월 20일

라. 상정일자 : 제150회 제2차 정례회 사회건설위원회 제4차회의(2009년 12월 3일)
상정 의결

2. 提案說明의 要旨 (제안 설명자 : 도시환경국장 박정희)

가. 제안이유

- 「친환경상품 구매촉진에 관한 법률」 제11조의 규정에 따라 자원의 낭비와 환경오염을 방지하고, 저탄소 녹색성장의 지속가능한 지역경제 발전을 위하여 친환경상품 구매촉진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하고자 함.

나. 주요내용

- 친환경상품 의무구매를 이행하기 위하여 친환경상품의 용어를 정의함 (안 제2조)
- 친환경상품 구매촉진 적용대상 기관을 구 본청, 보건소, 동주민센터, 구의회 사무국, 시설관리공단, 구에서 출연한 재단 등으로 함(안 제3조)
- 전년도 친환경상품 품목별 구매금액 및 구매이행계획 대비 구매실적 등을 집계하여 공표하도록 함(안 제6조)

- 친환경상품의 구매의무 범위 및 「친환경상품 구매촉진에 관한 법률」 제6조제5호에 따라 구매하지 아니할 수 있는 범위를 정하고, 구매 할 수 없는 경우에는 그 사유를 기록하도록 함(안 제8조)
- 친환경상품의 대상품목 외의 품목에 대한 친환경상품 판단기준을 정함(안 제10조)
- 친환경상품 구매증진을 위하여 관내 기관 및 단체 등에게 친환경상품의 우선 구매를 협조 요청할 수 있도록 함(안 제12조)

3. 專門委員 檢討報告의 要旨 (專門委員 : 이남식)

- 본 조례안은 「친환경상품 구매촉진에 관한 법률」 제11조(지방자치단체의 친환경상품 구매촉진 등)에 근거하여 제정하는 것으로 그 내용을 보면,
- 친환경상품에 대한 구매의무를 지는 공공기관의 범위, 구매·생산 촉진시책 수립, 구매이행계획 및 구매실적 공표, 구매의무범위, 관련 관내기업에 대한 지원 등을 주요 내용으로 하고 있고,
- 친환경상품 구매를 촉진함으로써 자원의 낭비와 환경오염을 줄여 저탄소 녹색성장의 지속가능한 도시로 성장하는데 기여할 것으로 사료되며, 조례안은 환경부에서 시달된 조례제정표준안에 의거 작성된 것으로서, 적법·타당하다고 사료됨.

4. 審査結課 : 原案 可決

서울특별시 영등포구 친환경상품 구매촉진에 관한 조례안

의안 번호	제 252 호
----------	---------

제출연월일 : 2009.11.

제 출 자 : 영등포구청장

1. 제안이유

「친환경상품 구매촉진에 관한 법률」 제11조의 규정에 따라 자원의 낭비와 환경오염을 방지하고, 저탄소 녹색성장의 지속가능한 지역경제 발전을 위하여 친환경상품 구매촉진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하고자 함.

2. 주요내용

- 가. 친환경상품 의무구매를 이행하기 위하여 친환경상품의 용어를 정의함
(안 제2조)
- 나. 친환경상품 구매촉진 적용대상 기관을 구 본청, 보건소, 동주민센터, 구의회사무국, 시설관리공단, 구에서 출연한 재단 등으로 함(안 제3조)
- 다. 전년도 친환경상품 품목별 구매금액 및 구매이행계획 대비 구매실적 등을 집계하여 공표하도록 함(안 제6조)
- 라. 친환경상품의 구매의무 범위 및 「친환경상품 구매촉진에 관한 법률」 제6조제5호에 따라 구매하지 아니할 수 있는 범위를 정하고, 구매 할 수 없는 경우에는 그 사유를 기록하도록 함(안 제8조)
- 마. 친환경상품의 대상품목 외의 품목에 대한 친환경상품 판단기준을 정함
(안 제10조)
- 바. 친환경상품 구매증진을 위하여 관내 기관 및 단체 등에게 친환경상품의 우선 구매를 협조 요청할 수 있도록 함(안 제12조)

3. 참고사항

가. 관계법령 : 「친환경상품 구매촉진에 관한 법률」

나. 예산조치 : 별도조치 필요없음.

다. 합 의 : 필요없음.

라. 기 타

(1) 입법예고('09.10.8 ~ 10.28) 결과 : 의견 없음

(2) 규제심사 : 심사대상사무 없음

첨부 : 서울특별시 영등포구 친환경상품 구매촉진에 관한 조례안.

서울특별시 영등포구 친환경상품 구매촉진에 관한 조례안

제1조(목적) 이 조례는 「친환경상품 구매촉진에 관한 법률」 제11조에 따라 서울특별시 영등포구의 친환경상품 구매를 촉진함으로써 자원의 낭비와 환경오염을 방지하고 지속가능한 지역경제발전에 기여함을 목적으로 한다.

제2조(용어의 정의) 이 조례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정의는 다음과 같다.

1. “친환경상품”이란 같은 용도의 다른 제품 또는 서비스(이하 “상품”이라 한다)에 비하여 자원의 절약에 기여하고, 환경오염을 줄일 수 있는 상품으로서 다음 각목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것을 말한다.

가. 「환경기술개발 및 지원에 관한 법률」 제20조제1항에 따른 환경성적표지의 인증을 위한 대상품목으로서 인증을 얻은 상품 또는 같은 법 제20조제3항에 따라 환경부장관이 정하여 고시하는 대상품목별 인증기준에 적합한 상품

나. 「자원의 절약과 재활용 촉진에 관한 법률」 제33조 및 「산업기술혁신 촉진법」 제15조에 따라 지식경제부장관이 정하여 고시하는 재활용제품의 품질인증 대상품목으로서 인증을 얻은 상품 또는 인증기준에 적합한 상품

다. 그 밖에 환경친화성을 가진 상품으로서 환경부장관이 지식경제부장관과 협의하여 고시하는 대상품목별 판단기준에 적합한 상품

2. “관내기업”이란 본사 또는 생산시설이 영등포구 안에 소재한 기업을 말한다.

제3조(적용대상 기관) 이 조례의 적용을 받는 공공기관은 다음 각 호와 같다.

1. 구 본청·보건소·동주민센터
2. 구의회 사무국

3. 영등포구 도시시설관리공단

4. 그 밖에 구에서 출연한 재단 및 기관

제4조(친환경상품 구매·생산촉진 시책의 수립) ① 구청장은 「친환경상품 구매 촉진에 관한 법률」(이하 “법”이라 한다) 법 제3조 제1항에 따라 지역 내에서 친환경상품 구매·생산을 활성화하기 위한 친환경상품 구매·생산 촉진시책을 수립하여 시행할 수 있다.

② 구매·생산촉진시책에는 다음 각 호의 사항을 포함하여야 한다.

1. 친환경상품 구매촉진을 위한 중·장기 계획
2. 친환경상품 구매촉진을 위한 교육·홍보 및 인력양성 계획
3. 관내기업의 친환경상품 기술개발 및 국내·외 판매지원
4. 관내 친환경상품 유통·판매 사업자 지원
5. 구민의 친환경상품 구매촉진을 위한 홍보 등

제5조(친환경상품 구매이행계획의 수립) ① 법 제8조제1항에 따라 구청장은 환경부장관이 통보한 친환경상품 구매지침을 참고하여 친환경상품 구매이행계획을 수립하고, 매 회계연도의 시작 전까지 이를 구 홈페이지 및 구보 등에 공표하여야 한다.

② 제1항의 친환경상품 구매이행계획에는 다음 각 호의 사항을 포함하여야 한다.

1. 친환경상품의 구매품목액 및 구매목표율 등 친환경상품 구매계획
2. 친환경상품 구매촉진을 위한 추진체계와 담당부서
3. 계약특수조건 규정, 기관업무평가, 제도개선 사항 등 친환경상품 구매촉진을 위하여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사항

③ 구청장은 구매이행계획을 수립함에 있어 필요한 경우 산업계·민간단체 등에 관련 자료의 제출을 요청할 수 있다.

제6조(친환경상품의 구매실적 관리) ① 법 제9조제1항에 따라 구청장이 집계·공표하는 전년도 친환경상품 구매실적에는 다음 각 호의 사항이 포함되어야 한다.

1. 친환경상품 구매이행계획 대비 구매실적
2. 친환경상품 생산·유통·판매사업자에 대한 지원 실적
3. 친환경상품 구매촉진을 위한 교육홍보 실적
4. 친환경상품 구매촉진을 위한 제도 개선실적과 수범사례 등
- ② 친환경상품 구매실적에 대한 공표방법은 제5조제1항을 준용한다.
- ③ 구청장은 구매실적을 집계함에 있어 필요한 경우 산업계·민간단체 등에 관련 자료의 제출을 요청할 수 있다.

제7조(친환경상품 구매의무) 법 제6조에 의한 구청장의 친환경상품 구매의무 범위는 다음 각 호의 경우로 한다.

1. 직접 상품을 구매하는 경우
2. 용역 및 유지보수 계약시 납품하는 상품을 통하여 간접 구매하는 경우
3. 건설공사 계약시 납품하는 상품을 간접 구매하는 경우

제8조(친환경상품 구매예외) ① 법 제6조제5호에 따라 다음 각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친환경상품을 구매하지 않을 수 있다.

1. 구매하고자 하는 상품이 친환경상품의 품질기준보다 현격하게 우수한 경우
2. 사용자의 품질에 대한 불만이 지속적으로 제기되고 이에 대한 합당한 이유가 있다고 판단되는 경우
3. 친환경상품의 재고 부족 등의 사유로 제품 공급에 장기간이 소요되어 구매 목적의 달성이 어려울 경우
4. 긴급 구호물자 조달 등과 같이 긴급한 수요가 발생한 경우
5. 친환경상품의 가격이 지나치게 높아 해당 회계연도내의 예산으로 계획된 제품구입이 불가능한 경우

② 구청장은 법 제6조 제1호 내지 제4호 또는 제1항의 각 호에 해당되어 친환경상품을 구매할 수 없는 경우에는 그 사유를 기록하여야 한다.

제9조(판단기준의 설정·관리) ① 법 제11조제1항제2호에 따른 친환경상품 대상품목 외의 품목에 대한 친환경상품 판단기준(이하 “판단기준”이라 한

다)은 다음 각 호와 같다.

1. 「수도권 대기환경 개선에 관한 특별법」에서 정한 저공해자동차
2. 「건설폐기물의 재활용촉진에 관한 법률」에 따른 순환골재
3. 「환경기술개발 및 지원에 관한 법률」에 따른 환경성적표지 인증제품
4. 「에너지이용합리화법」에 의한 에너지 소비효율 등급제품

② 구청장은 설정한 판단기준에 적합한 상품을 발굴하여 관내 기관의 장 등에게 구매를 권고할 수 있다.

③ 설정된 판단기준 운영 결과 해당상품의 환경친화성이 우수하다고 판단될 경우 구청장은 환경부장관에게 친환경상품 기준으로 지정할 것을 건의할 수 있다.

제10조(교육훈련) 구청장은 친환경상품의 구매를 촉진하기 위하여 상품을 구매하는 기관의 구매담당자 등을 대상으로 매년 교육계획을 수립·시행한다.

제11조(친환경상품 생산지원) 구청장은 관내기업의 친환경상품 생산과 기술개발 및 친환경상품의 유통·판매를 위한 홍보, 시장개척, 수출 등을 위하여 필요한 행정지원을 할 수 있다.

제12조(친환경상품 구매문화 증진사업) ① 구청장은 관내에 소재한 아래의 기관 및 단체에게 친환경상품의 우선 구매를 요청할 수 있다.

1. 학교법인
2. 종교시설
3. 체육시설
4. 산업계

② 구청장은 필요한 경우 관계기관·단체의 장과 친환경상품 구매촉진을 위한 자발적 협약 등을 맺을 수 있다.

③ 구청장은 관련 단체 등의 친환경상품 소비촉진을 위하여 추진하는 교육·홍보사업에 대하여 행정지원을 할 수 있다.

제13조(포상) 구청장은 친환경상품의 생산·소비촉진에 기여한 공적이 탁월한 공공기관 구매담당자 및 생산자, 민간단체 관계자 등 유공자를 발굴하여 포

상할 수 있다.

제14조(시행규칙) 이 조례의 시행을 위하여 필요한 사항은 규칙으로 정한다.

부칙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